

연구 자료

##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의 이익공유를 위한 체재 지리적 표시와 상표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오 윤 석\*

Key words: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이익 공유(Benefit-sharing),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상표(Trademarks)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innovative use of some legal tools to support the efforts of the people of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to conserve and use sustainably their biological diversity, biological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So, this study reviews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as possible incentives for the marketing of products from biological resources produced through tradition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s. It includes case studies: Kava, Rooibos, Quinoa, Basmati rice and Neem. Through the case studies, this study will review two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discussions of sustainable use or benefit-sharing derived from bio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onclusio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p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benefit more equitable for the commercial use of their knowledge.

- |                         |                                       |
|-------------------------|---------------------------------------|
| 1. 서론                   | 4.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통한 보호 가능성에<br>대한 사례 연구 |
| 2. 생물 다양성과 관련 지식        |                                       |
| 3. 이익 공유장치로서 지리적 표시와 상표 | 5. 결론                                 |

\* 충남대학교 법학부 강사.

## 1. 서론

인류는 생활의 모든 필요와 편의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및 미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생물자원들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중요성에 관하여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그러나 육종기술을 포함한 현대 생명공학(biotechnology)의 발전은 이들 생물자원에 포함된 많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고,<sup>1</sup> 이들 생물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가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확보와 이들 분야의 육성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2</sup>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하여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농부들의 기여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들 공동체의 관련 지식은 생물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sup>1</sup> 생물 다양성협약은 '생명공학'을 "생물학적 체제, 생물유기체 또는 특별한 사용을 위한 생산이나 공정의 제조나 변경의 파생물질을 이용한 과학·기술적 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sup>2</sup> 선진국들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발전한 상태에 있고, 꾸준히 생물자원의 탐색과 수집에 관심을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에서 신제품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물의 신품종과 신약의 개발을 위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박철호 등 2000);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생명공학연구원에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http://www.pdrc.re.kr>).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미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공동체가 갖고 있는 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은 21세기 생명공학의 시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생물 다양성과 생물자원 및 이들에 관련된 지식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 중에서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이용한 보호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이들 생물자원과 관련 지식의 보호를 위한 기타 지적재산권 체제의 활용은 많이 논의되었다.<sup>3</sup> 따라서 일부 생물자원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생물 다양성과 관련 지식

### 2.1. 생물 다양성과 관련지식의 보호 필요성

지역공동체와 '토착민'의 생물 다양성,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 지식'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sup>4</sup> 이들은 전통적이고 환경적으

<sup>3</sup> 생물 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 지적재산권체제의 이용에 관한 논의는(오윤석 2003, 49-71 참조).

<sup>4</sup> '토착민(indigenous people)' 또는 원주민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디언이나 남미의 인디언과 같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구인의 입장에서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Halewood 1999, 957-959; 이재곤 2001. 52).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과거

로 건전한 방법으로 생물자원에서부터 제품을 생산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일부 식물에 대한 사례 연구를 기초로 한다.

‘생물 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존은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지역 주민의 노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승인되었다.<sup>5</sup>

이들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 지식은 의약품, 식료품과 기타 제품의 자원으로서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이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 지식은 이들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학문적 연구자, 정부기관과 상업적 회사 등

을 포함한 외부인들에게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업적 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는 이미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관련 지식이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경제적 이익을 이들 공동체와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 2.2. 생물 다양성과 관련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

전통 지식은 문화유산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그들 보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전통 지식의 보호는 국제인권법하에서 승인된 문화생활의 유지와 참여에 대한 권리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sup>6</sup> 토착민들은 1994년의 토착민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초안(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Indigenous Rights)에서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형태로서 이 전통 지식을 통제하고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승인되었다. 전통 지식의 구조와 내용은 지역적 생물자원과 생태계 그 자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보호는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생물자원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Daes 1993. 26).

생물 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 지식의 보호를 위해서는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이익증대를 위한 시장 관련 인센티브를 포

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및 문화 등에 관한 결과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전통의 약, 전통치료행위, 식품, 농업, 환경 등에 관한 지식과 전통문학, 음악, 미술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된다(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2. 1-5).

<sup>5</sup> 생물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이란 육상, 해양 및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는데, 이는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생물 다양성협약 제2조).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이란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되거나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 생물체 및 그 부분, 개체군 및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 요소를 말하며,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식물·미생물의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유전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생물 다양성협약 제2조.

예를 들면, 이들 지역의 주민은 산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제연합 정부간 산림패널(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에 의해 승인되었다.

<sup>6</sup>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참조.

함한 가능한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호 조치에 관하여 생물 다양성협약 제8조 (j)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그들 보유자의 광범위한 승인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촉진’(promote)과 이익 공유의 ‘장려’(encourage)의 표현은 사적 부문을 포함한 시민사회행동의 영향과 같은 시장유인 조치를 포함하려는 것이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 전통 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생물 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CBD),<sup>7</sup>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운영기구(Governing Body: GB), 세계지적재산권기

구(WIPO) “지적재산,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 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and Folklore: GRTKF)<sup>8</sup>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에서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 이사회(Council of TRIPs)<sup>9</sup>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물 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COP/CB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논의는 주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주권 승인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보호를 위해 기존 국제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아직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up>7</sup> 생물 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는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on the Work),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협약 제8조 (j)와 관련 조항에 관한 작업반’(Ad Hoc Open-ended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구성하였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규율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Bonn 지침(Bonn Guidelines)은 바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작업반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sup>8</sup>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정부 간위원회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포함하는 물질이전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을 제안하였다. 동 물질협정의 내용으로는 ① 연구 목적만을 위한 이용허락, ② 특허 불출원의무, ③ 지적재산권의 공유조항, ④ 지적재산권사용료의 공유조항, ⑤ 자연산출물 및 파생물질, ⑥ 관련 특허의 사용허가, ⑦ 발표연기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sup>9</sup> TRIPs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논의는 지리적 표시의 통보 및 등록에 관한 다자체제의 설립문제, 지리적 표시의 품목확대문제, 생명공학특허 및 생물 다양성협약과 TRIPs협정의 조화문제 및 TRIPs협정 제27조 제3항 (b)의 개정문제 등이다.

### 3. 이익 공유장치로서 지리적 표시와 상표

#### 3.1. 일반적 문제

많은 학자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가 근본적으로 전통적 문화적 재산권과 관습법에 충돌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지적재산권이 주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이익보다 산업적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는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재산권의 전통과 충돌하는 사적 소유권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보다 이들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통제권은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들은 일정한 정보 이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은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된 전통적 지식의 측면을 더욱 반영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상표의 등록 또는 집행을 위한 규정을 이미 요구받고 있고, 여러 국가들은 지리적 표시보호체제의 확립을 고려 중에 있다.<sup>10</sup>

<sup>10</sup> TRIPs이사회(TRIPs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모로코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지리적 표시를 통한 그들 제품의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Trade Topics: TRIPs Council 1-2 December 1998: Discussion develops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와 상표에 관련된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이다.<sup>11</sup> WTO의 회원국들은 지리적 표시와 상표뿐만 아니라 저작권, 특허권, 식물품종 보호(PVP), 의장, 반도체 배치 설계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일정한 범주에서 모든 과학기술의 형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권리 보유자의 침해청구를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 절차와 구제체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 3.2.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up>12</sup>에 대하여 TRIPs협정 제22조 제1항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서 하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은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등록

(www.wto.org).

<sup>11</sup> 기타 협정은 1958년의 원산지와 그들의 국제적 등록의 보호를 리스본협정(1958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1967, 1979년 개정)이다(www.wipo.org).

<sup>12</sup> 원산지(origin)는 원래 포도주, 치즈 등과 같이 특정 토지의 자연적 조건과 생산물의 특성, 품질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주로 농업생산물의 원래의 산지명칭(좁은 의미의 원산지명칭)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전된 개념이다(송영식, 이상정, 황중환 1999, 369).

을 금지해야 하고, 그들의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들 제품에 대한 장소 표기로부터 경쟁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절차를 규정해야 한다(TRIPs협정 제22조). TRIPs협정 제23조는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의무들은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TRIPs협정 제24조). 예를 들면, 영국에서 처음 제조된 “체다”(cheddar) 치즈의 명칭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치즈에 대한 명칭으로 이용되고 있다(Prakash 1998, Part 6). 또한 중요한 것은 TRIPs협정 제24조 제9항으로 WTO의 회원국들은 그들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를 규정할 의무가 있다.

지리적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확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전통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있는 지역에서 전통적 방법을 사용한 생산자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창출한다. 지리적 표시는 문화, 토지, 자원과 환경간의 관계를 표시하여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가 기초하고 있는 문화, 세습적 토지와 자원의 상호연결성의 강조에 일치한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원산지명칭 통제체제(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AOC)이다.<sup>13</sup>

<sup>13</sup> 프랑스의 appellation d'origine 또는 원산지명칭 등 원산지개념은 가장 잘 알려진 지리적 표시의 형태이다. 프랑스의 원산지명칭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절대적이고 또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품질과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나타내

### 3.3. 상표

상표는 사용권을 가지는 회사의 제품 라벨 또는 광고에 전형적으로 부가된 차별적인 상징, 디자인, 단어 또는 단어의 연속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다.<sup>14</sup> TRIPs협정 제15조는 상표를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WTO의 회원국들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등록된 상표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유사한 표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에 대한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규정하여야 한다. 등록된 상표는 원산지표지의 관행과 유사하게 무한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TRIPs협정 제18조).

이 연구와 관련된 특별한 형태의 상표는 집단적 표지와 인증표지이다.<sup>15</sup> 집단적 표

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성의 지리적 명칭으로”로 정의된다. 프랑스에서 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AOC)는 잘 발달된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제도로 400개의 포도주, 32개의 치즈와 기타 음료, 호두와 가금류 등을 포함한다(Downes 1997).

<sup>14</sup> 상표(trademark, Warenzeichen)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의 수단에 의하여 상품을 표상하는 상징적 표지(symbol mark)이며 상품소유자는 그것으로 자기 상품을 현상적으로 표현하여 상품의 출처, 품질, 성능 등을 나타내고 일반 소비대중은 상품을 연상케 하는 심리적 작용에 따라 상품선별의 수단으로 삼는다(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1999, 45).

<sup>15</sup> 인증표지(certification marks)와 관련하여 산림제품의 인증체제를 개발하려는 가장 야심 찬 국제적 노력 중의 하나는 산림지기이사회(the

지는 협력적 구성원, 연합체 또는 기타 집단적 그룹에 의해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이다.<sup>16</sup>

집단적 인증마크는 제품과 생산방법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 라벨링”과 같은 유기적인 식품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생산에 관련된 사회적 고용조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임금을 받고 최소한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구매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공정거래”(fair trade) 라벨이 있다 (Downes 1997).

#### 4.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통한 보호 가능성에 대한 사례연구

##### 4.1. 카바(Kava)

##### 4.1.1. 전통적 및 상업적 이용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이다. 1993년 설립된 FSC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련 단체들을 육성하고, 산림과 제품의 인증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FSC 1998).

<sup>16</sup> 서비스마크(service mark)는 서비스업자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자기의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영업표지이다. 서비스마크는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광고·보험·금융·방송·통신·건축·운수·광고 등의 업무나, 영화·호텔·레스토랑·세탁·전기 및 가스공급사업 등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마크가 이에 속한다.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7조 bis는 회원국은 “비록 연합체들이 산업적 또는 상업적 설립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산지국의 법에 반대되지 않는 기준의 연합체에 속하는 집단적 마크”를 승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카바(Kava Kava, Piper methysticum, Piperaceae)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하와이,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Vanuatu)와 월리스 푸투나(Wallis Futuna)를 포함한 남태평양제도의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다년생 관목이다. 전체 118종의 카바 중에서 80종이 바누아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바의 활성성분은 수면제, 진통제, 부분마취제, 항근육경련제, 항박테리아와 음식보존에 유용한 것들을 포함한다.<sup>17</sup>

남태평양의 도서국가의 사람들은 많은 의식과 사회적 행사를 통하여 카바의 교환과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 카바는 사용목적에 따라 때로 특별한 방식으로 특정한 형태로 재배되었다. 바누아투의 탄나(Tanna) 섬에서 카바는 관습적 교환을 위해 양치식물의 줄기에서 재배되었고, 역사적으로 추장이나 고위층에서 소비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카바의 의식적 이용은 정신의 이완과 명상적 효과와 관련된다. 여러 사람들이 카바를 같이 마시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 차, 커피와 술을 같이 마시는 것과 비교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 또한 카바는 비뇨생식기염증, 방광염을 포함하여 두통, 천식, 결핵과 치통 등을 치료하기 위한 다

<sup>17</sup> 그러나 카바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카바락톤물질은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중독, 위장장애, 호흡곤란,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원에 의해 주장되었다. 현행 식품공전에 따르면 카바카바 성분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용불가’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일보, 2002년 2월 5일자 참조.

양한 조건에서 의학적으로 이용된다. 카바는 균 감염과 기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부적으로 응용된다.

태평양 제도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카바는 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소비된다. 이것들의 상당량은 ‘카바 바’(Kava bar)에서 카바음료의 판매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소비된다. 또한 많은 양의 카바가 본초식물 의약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해외로 수출된다. 미국의 나트롤(Natrol)사의 연구에 따르면 카바의 전체 생산은 매년 4,0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Verrengia 1998, 54). 카바는 미국에 처음 도입된 후 1998년 7월까지 473%를 성장하였고 미국의 거대시장에서 다섯 번째 빠르게 성장하는 본초식물제품이다(Brevoort 1998).

#### 4.1.2. 지적재산권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카바의 제품을 특별한 명칭으로 표시하기 위한 ‘카바’상표, 집단적 마크 또는 인증마크를 만들기 위한 조직의 설립을 주장하였다(Peteru 1997). 1998년 10월 제2차 지역적 카바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카바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지역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장, 농학과 수확 후의 취급에 따른 지적재산권방식이 논의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카바퓨어’(Kava Pure)와 ‘카바트릴’(Kavatrill) 등 카바에 관련된 상표를 갖고 있다. 또한 카바의 추출물과 활성성분에 대해 적어도 다섯 개의 카바특허가 존재한다.<sup>18</sup>

바누아투를 표면적 다양성의 중심지로 한

카바의 유전자원은 남태평양의 국가들에 전파되었지만, 생물 다양성협약의 비 당사국인 미국의 하와이를 포함하여 기타 많은 섬에서 재배되고, 카바의 표본들이 태평양의 외부에서 현지 외 수집(ex situ collection)에 의해 나타난다.<sup>19</sup>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sup>20</sup>의 보호 요건적 측면에서 “모든 전통적인 재배종들은 아마도 수 세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카바 품종이 식물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의심된다.

카바는 지리적 표시 또는 상표의 이용에 중요한 잠재적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한 상표, 특히 원료물질의 환경적 및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출처와 공정을 위한 기준을 대표하는 인증마크는 그것의 이용자들

<sup>18</sup> Natrol사는 카바, 채모마일(chamomile), 홉스(hops), 쉬장드라(schizandra)로 구성된 일반적인 진정제로서 기능하는 식품인 카바트릴(Kavatrill)에 대한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Valley and Ventura County: Regional Roundup: Natrol Wins Patent for Plant-based Relaxant”, L. A. Times, Aug. 11, 1998, Part D, p.12A.

<sup>19</sup> 현지 외 수집(ex-situ collection)이란 종자은행, 야외은행, 정자 및 난자은행과 같은 유전자은행 등 식물이나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집을 말한다.

<sup>20</sup>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UPOV)*.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은 식물 신품종의 보호를 위하여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1961년 12월 2일 프랑스의 파리(Paris)에서 채택되었고 1968년 8월 10일 발효하였다. 그 후 3차에 걸쳐 개정이 있었는데, 1972년(제네바), 1978년(제네바)과 1991년(제네바)의 개정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7일 동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2002년 1월 7일 발효하여 1991년 개정 UPOV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국립종자관리소, 2000; <http://www.wipo.org/treaties/index.html>).

에게 시장의 공유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물 또는 야생으로부터 수확된 품종의 생산은 재배 지역의 확대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 또는 토양침식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재배 기술의 이용증가를 통하여 생물자원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sup>21</sup> 지리적 표시 또는 상표를 적용하기 위한 체제는 그러한 이용의 형태를 회피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카바포럼사무국은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명칭통제(AOC) 또는 캘리포니아, 한국과 중국 간의 인삼을 구분하기 위해 이용되는 체제와 같은 접근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sup>22</sup>

<sup>21</sup> 여기에서 생물자원은 카바차체뿐만 아니라 카바의 생산을 지지하는 토양과 기타 식물과 같은 생태계와 그의 구성물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sup>22</sup> 인삼은 다년생의 半陰地性 宿根草로서 식물학적으로 보면 五加科 人參屬에 속하며 고려(금산) 인삼의 학명은 *Panax ginseng* C. A. Meyer로서 1843년 소련의 Cal Anton Von Meyer가 명명한 것이다. 고려(금산)인삼의 속명인 *Panax*는 그리스어 PAN(모두)과 AXOS(의약)가 결합한 복합어로서 ‘만병통치약’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인삼의 주요성분으로는 인삼사포닌(Ginsenoside)을 광범위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까지 30종의 인삼사포닌이 분리되었고 그 화학구조가 모두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인삼에는 당뇨병의 치료제인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과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 및 암세포 증식억제성분 등 많은 종류의 유효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의 인삼이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인삼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갖고 이들 외국산 인삼들과 우리나라의 인삼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

## 4.2. 루이보스(Rooibos)

### 4.2.1. 전통적 및 상업적 이용

루이보스(*Aspalathus linearis*, Fabaceae)는 밝은 녹색의 바늘 형태의 잎을 갖고 발효하게 되면 불그스레한 갈색으로 변하는 잎을 가진 1-2미터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관목이다.<sup>23</sup> 이 종은 남아프리카의 서부 희망봉(Cape)의 주변 지역에서 확인되는 지

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특산물”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리적 특산물 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gseng* C. 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sup>23</sup> 루이보스 차의 이용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기록은 1772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100여 년 전에 유럽에 전파되어 건강에 좋은 차로로서, 특히 유아들에게 좋은 차로 보급되었으며 현재 미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에서 식용되고 있다. 루이보스는 차 제품 이외에 피부미용제품, 각종 건강식품 등의 첨가제의 원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해관목지대의 핀보스(Fynbos) 생태계에 고유한 종이다(Wyck and Gericke 1997).

루이보스 차는 커피와 흑차(black tea)가 하루 일과의 주류를 점유해 왔던 남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특정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식품상점에서 판매되었다. 루이보스를 이용하여 제조된 홍차(red tea)<sup>24</sup>의 원 제품명칭은 “표준화된 공급수준 이하의 초기의 제품에 비해서 그 제품이 높은 품질로 재배되고 제조된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루이보스 또는 ‘레드부시’(red bush)”라는 이름으로 제품생산자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루이보스 차는 희망봉의 클랜윌리엄(Clanwilliam) 지역의 고이(Khoi)족 사람들의 전통적인 음료이고, 남아프리카의 토착 식물 중에서 중요한 상업작물이 되었다. 고이족의 지역공동체는 도끼를 사용하여 가지와 잎을 자르고 나무망치로 그것들을 으깨고 이것이 발효되어 향기를 맞고 “벌들이 올 때까지” 덩어리 상태의 물질을 햇볕 아래에서 얇게 널어놓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야생식물을 수확하고 차를 생산하

였다. 클랜윌리엄 지역의 골짜기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루이보스차가 제조되고 있다.

루이보스의 상업적 재배 관행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생산자들의 경험과 연구에서의 신개발을 기초로 삼아 루이보스의 재배 방법은 개선되고 단일화되었다. 오늘날, 일부 루이보스는 야생에서 수집이 계속되지만, 대부분은 ‘야생’ 개체수의 전통적 경영을 가졌던 것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집약적 농업체제에서 생산된다. 현재 루이보스는 거대 시장인 일본과 독일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국에서 판매된다.

#### 4.2.2. 지적재산권

루이보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는 김이 나는 찻잔을 묘사한 로고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루이보스 차 브랜드 명칭은 남아프리카에서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은 것 같다. 1998년 소아용 진경제(항경련제)와 같은 좋은 효과를 발견한 애니키 태론(Anniekie Theron)은 ‘루이보스’라는 명칭으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상표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루이보스에 대한 이러한 상표들은 집행되지 않았고, 그들이 남아프리카 또는 다른 곳에서 루이보스명칭의 표면적인 일반적 특성이 어떤 측면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는 루이보스차에 대한 주요 생산과 소비국이지만, 남아프리카가 지리적 표시 또는 상표 및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가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토착민이 아니다. 거대 루이보스

<sup>24</sup> 인도는 세계 제1위의 홍차 생산국이고 제1위의 홍차 소비국이다. 특히 인도 북동지방의 Darjeeling, Assam과 남인도 지방의 Nilgiri가 유명한 홍차의 산지이다. 또한 스리랑카는 세계 제2위의 홍차생산국이다.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는 실론 티(Ceylon tea)라고 불리며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Uva, Dimbula, Nuwara Eliya 등이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홍차인 오렌지 페코(Orange Pekoe)는 실론 티와 인도 차를 브랜드한 것이다. 한편 브랜드화한 차는 English Breakfast, Irish Breakfast, Orange Pekoe, Royal Bland, Afternoon Tea, Russian Caravan 등이 있다.

제조자들은 단 1~3%만을 “소규모의 농부 와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공동체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접근은 루이보스차가 처음으로 개발 되었던 클랜윌리엄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 4.3. 퀴노아(Quinoa)

#### 4.3.1. 전통적 및 상업적 이용

퀴노아(Chenopodium quinoa, Chenopodiaceae) 는 한발에 강한 안데스 원산지의 식량작물 이다.<sup>25</sup> 퀴노아는 고도에서 잘 자라고 거의 해발 4,000미터에서 재배되었다. 퀴노아는 비옥한 토양에 잘 적응하지만, 한계(변두 리)토양에서는 적은 산출량으로 재배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주요 곡물은 아니지만, 퀴노아는 옥수수, 쌀, 밀, 오토밀, 기타 곡 물과 같은 비교음식보다 높은 영양가가 있는 높은 품질과 양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곡물을 생산한다.

퀴노아는 전통적으로 안데스의 토착민에 의해 재배되었다. 안데스의 토착공동체는 아펠와(Apelawa), 출피(Chullpi), 칸콜라 (Kancolla), 마랑가니(Marangani), 블랑카 드 주닌(Blanca de Junin), 로사다드 주닌 (Rosada de Junin), 위출라(Witulla), 코이 투(Ccoitu), 리얼(Real) 등 수많은 퀴노아품

종을 육종하였다. 현재에는 30개 이상의 품 종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작물로써 퀴노아의 용도는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요리용으로는 전체 곡물, 낱것 또는 구운 가루, 작은 잎, 거친 가루, 즉석 가루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더욱이 식 물전체는 녹색사료로 이용되었고, 식물의 구성성분들은 전통의약으로 이용되었다 (Bermejo and Leon 1994).

1970년대 후반 퀴노아의 곡물시장은 안 데스국가들과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재배된 퀴노아의 수입에 의한 공급으로 북미와 유 럽의 건강식품 부문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 았다. 1990년대 이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 다. 현재 퀴노아에 대한 미국의 생산량에서 약 2~3%만이 미국의 자체 수요를 위해 공급되고, 나머지 미국의 생산량의 대부분 은 유럽으로 수출된다.

#### 4.3.2. 지적재산권

국제농촌개발협회(the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RAFI)<sup>26</sup>와 볼리 비아의 전국퀴노아생산자협회는 1994년 미 국에서 특허가 부여된 “시토플라즈믹 매일 스토릴 퀴노아”(Cytoplasmic Male Sterile Quinoa)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sup>27</sup> 이

<sup>25</sup> 잉카제국의 “수퍼 곡물”로 불리던 퀴노아는 지 난 수천년 동안 안데스지역의 주요 농산물이 었으나 근세에 와서 겨우 일부 농가에서 자급 자족으로 명맥만 유지해 왔다. 그 후 영양학 적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면서 품종 개량과 보 급노력에 힘입어 1980년 이후 빠르게 국제곡 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sup>26</sup> 국제농촌개발협회(RAFI)는 1977년 11월 국제식 량활동가회의에서 설립되었다. 현재는 침식· 기술· 집중에 대한 활동그룹(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 ETC Group)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ETC그룹 은 문화적·생태적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 능한 발전과 함께 인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 다(<http://www.cbdcprogram.org>).

<sup>27</sup> 미국 특허번호: 5304718(Bonifacio, 1997).

의 제기 사유는 수컷 번식 특성이 있는 퀴노아의 존재와 가치는 많은 전통적 재배자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명가는 그 변종이 콜로라도에서 재배되는 볼리비아 아펠와(Bolivian Apelawa)종의 관련 퀴노아 재배지 근처에서 자라는 관련 야생종으로부터 시토플라즘(cytoplasm)의 자연적이고 유연한 이전의 결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특허는 보유자가 갱신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취소되었다.

재배된 퀴노아의 광범위한 유전적 다양성, 많은 전통적 품종의 존재, 영양적으로 우수한 특성, 다양한 이용과 환경적으로 건강한 재배 관행의 유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리적 표시 또는 상표는 광범위한 재배와 어느 정도 소규모의 농부들에 의해 생산되는 지역공동체에 대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장려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볼리비아에는 지리적 표시체제를 위해 요구되는 생산과 공정의 규칙을 정형화할 수 있었던 활동적인 지역적 퀴노아생산자연합이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마크가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으로서 작용한다면,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생산자들에 의해 마련된 기준은 환경적인 측면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8</sup>

<sup>28</sup>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WTO의 회원국들은 원산지국 자신이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 4.4. 바스마티 라이스(Basmati Rice)

##### 4.4.1. 전통적 및 상업적 이용

바스마티 라이스(*Oryza sativa*, Poaceae)는 주로는 편잡 지방에서 재배되지만 북부 인도와 파키스탄지역에서 재배되는 낱알이 길고 향기를 가진 쌀 품종이다.<sup>29</sup> 바스마티라는 단어는 힌두어로 “향기로운 것” 또는 “향기로운 대지”를 뜻한다. 인도산의 데라둔(Dehra Dun)과 파트나(Patna)와 자스민 라이스(Jasmine rice)로 알려진 타이 프래그런트(Thai Fragrant)와 같은 기타 유명한 쌀 품종처럼, 바스마티 쌀은 특징하게 의도된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바스마티 쌀은 히말라야의 산기슭의 작은 언덕인 캐널(Kanal)지역과 데라둔(Dehra Dun) 지역에서 기원한다. 재래종은 현재 대규모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변적인 농부들에 의해서만 이용된다. 바스

<sup>29</sup> 바스마티 쌀은 향기가 나는 쌀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 재배되어 온 작물이다. 바스마티 쌀은 냄새가 좋을 뿐 아니라 밥을 지으면 밥알이 길게 부풀어지는 특성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이 바스마티 쌀을 20-30만 톤씩 중동이나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회교권국가에서 어떤 종교적 행사의 식이 있을 때 특히 이 바스마티 쌀을 사용한다. 태국에서도 많은 바스마티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것은 카오 독말리(Khao Dawk Mali)라는 품종이다. 아밀로스 함량이 매우 낮아 찰기가 있으면서 향기가 좋은 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에도 맞는다. 미국의 경우도 바스마티로부터 유래한 델라(Della)라는 바스마티 품종을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재배하여 일부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마티 쌀의 상당한 양은 국내적 및 국제적 시장판매를 위해 재배된다. 1997년 바스마티 쌀은 인도의 전체 쌀 수출량에서 51%를 점유하였다. 인도의 바스마티 쌀의 수출은 매년 2억 770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Prakash 1998, Part 6). 바스마티 쌀의 주요 시장으로 미국은 매년 수출된 48만 톤 중에서 45,000톤을 수입하였고, 영국은 유럽에서 최대의 수입국이다. 또한 미국의 쌀 생산자들은 바스마티 품종에서 유래한 쌀을 생산한다.<sup>30</sup>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공공 또는 사적 부문의 농업연구기관들은 인도 아대륙의 외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해 변형된 바스마티 쌀 품종을 연구 중이다.<sup>31</sup>

#### 4.4.2. 지적재산권

바스마티 쌀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적인 논쟁이 발생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의 회사들은 그들 나라에서 바스마티 품종을 기초로 삼아 쌀을 생산하였고 그의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바스마

티 쌀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Establishments Haudeceur La Courneuve사는 바스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리즈롱 바스마티”(Riz Long Basmati)와 “리즈롱 바스마티 리즈두몽”(Riz Long Basmati Riz du Monde)이라는 2개의 프랑스 상표를 부여받았다. 이에 대하여 인도 정부는 프랑스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라이스텍(Rice Tec)사는 “텍스마티”(Texmati), “텍스마티 텍사스 아로마틱 라이스”(Texmati Texas Aromatic Rice), 그리고 현재 대부분은 “카스마티”(Kasmati)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미국과 중동에 그들의 바스마티 쌀을 여러 해 동안 판매하였다.<sup>32</sup>

바스마티에 관련된 쌀 품종에 대한 특허는 특별히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1997년 라이스텍사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바스마티 쌀의 좋은 특성에 비해 유사하거나 또는 월등한 특성과 품질을 가지는 쌀을 생산하는 반 난쟁이상태(곡식의 낱알이 매우 작은 형태를 띠는)이며, 실제로 광주기가 집약적이며 높은 산출량을 가지는 식물인 새로운 쌀 계통”으로 구성된 변형된 바스마티 쌀 품종에 대한 특허를 부여받았다.<sup>33</sup> 라이스텍사는 새로운 바스마티 계열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육종기술과 생명공학을 결합하여 이용하였

<sup>30</sup>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펙귄(Penguin Natural Foods)사는 바스마티 쌀을 다음과 같이 광고한다. “향기 나는 맛과 향으로 알려진 매우 가늘고 긴 낱알을 가진 쌀. 그것의 훌륭한 품질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바스마티 쌀은 텍사스에서 재배되었고 흰 쌀 또는 갈색 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http://www.penguinfoods.com/n\\_rice.html](http://www.penguinfoods.com/n_rice.html)).

<sup>31</sup> 일반적으로 지구 상에는 존재하는 대륙은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등 7개 대륙으로 구분한다. 아대륙(亞大陸)이란 이와 같은 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도와 같은 크기의 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을 아대륙(Subcontinent)이라 지칭한다.

<sup>32</sup> 또한 라이스 텍(Rice Tec)사는 태국의 쌀 생산자들과 분쟁이 될 수 있는 Thai Jasmine Rice를 기초로 삼아 생산한 “자스마티(Jasmati)”라는 상표를 갖고 있다.

<sup>33</sup> Basmati rice lines and grains, U.S. Patent No.5,663,484, September 2, 1997.

다고 주장하였다. 라이스텍사의 생식질 수집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생식질은 생물 다양성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획득된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미국이 생물 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동 협약의 이익 공유 원칙은 라이스텍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리적 표시로서 “바스마티”라는 단어의 이용을 규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은 원래 형태의 쌀이 있는 인도 아대륙의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TRIPs협정 제24조 제9항). 그러나 장기적으로 두 정부가 바스마티 쌀 품종에 대한 원산지명칭체제를 통하여 그 단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의 일반적인 자격부여에서 단어에 관계없이 특정한 바스마티 품종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상표 보호는 인도 또는 파키스탄의 생산자들 또는 수입국의 구매자들이 바스마티라는 명칭사용을 위한 등록된 상표를 가진다면, 그들을 위한 유용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 4.5. 님(Neem)

### 4.5.1. 전통적 및 상업적 이용

님(*Azadirachta indica*, Meliaceae)은 인도 아대륙이 원산지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 열대지역에 걸쳐 귀화하여 보급되어 있는 식물 종이다. 님나무는 건조 또는 반건조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자란다. 님나무는 가뭄에

잘 생존하고, 빨리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씨앗을 풍부하게 생산하고, 농부들의 노동력 투입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Gupta 1995. No. 1507). 건조한 해에 생산된 님의 잎들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 인도에서 발견되는 님은 상당히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 현재 님은 아프리카, 중미, 카리브와 하와이를 포함하여 인도의 외부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된다.

님은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세기에 걸쳐 인도의 농부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살충제로서 님은 다른 기관에 해롭지 않게 작물해충을 표적으로 하는 희귀한 능력을 갖고 있고, 상업적 화학살충제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안으로서의 상당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또한 님은 녹병과 노균병균과 같은 버섯과 같은 질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님은 기타 수많은 전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갖고 있다. 님은 말라리아와 회충의 치료에 이용되었고, 잎은 해충으로부터 저장된 곡물과 줌으로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님의 기름은 초, 비누, 피임약으로 이용되었고 심지어 디젤엔진의 연료로도 가능하고, 5억 명의 인도인들은 치약으로서 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tum and Gerrits 1991. No.1). 그리고 님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된다. 님에 대한 공적 및 사적 연구는 광범위하다.

여러 개의 님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그레이스(W.R. Grace)사는 인도에 새로운 시

설을 갖추고 인도의 마고(PJ Margo)사와 공동으로 님에 기초한 살충제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제품이 2000년 까지 매년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AgBiotechnology News, 1993, Feb. 4). 어그리다인 테크놀로지(AgriDyne Technologies)사는 미국정부로부터 님에 기초한 생물살충제의 판매 승인을 받았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그의 님 제품을 등록하였다. 살충제가 님 수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만, 또한 님 제품은 화장품, 개인적 치료와 의약품과 같은 영역에서 적합한 시장이 있다.

#### 4.5.2. 지적재산권

님에 관련된 발명들은 미국에서만 40개 이상이고,<sup>34</sup> 인도에서 인도회사가 갖고 있

는 여러 개의 특허를 포함한 기타 국가의 특허 등 상당한 수의 특허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5</sup> 이러한 모든 특허들은 증가하는 혁신적 단계와 관련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전통 지식체제 내에 있는 인도의 지역 주민에 의해 독창적으로 개발된 지식에 의존한다.

님에 기초한 제품시장에 지리적 표시 또는 상표가 지속 가능한 이용 또는 이익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님 살충제 판매를 위해 인도의 소규모 농부와 같은 가내 농장주들과 유기적인 재배자들이 환경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배되었다는 것에 대해 라벨링을 하는 일부 잠재성은 존재할 수 있다. 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개인적 치료제품에 대한 유사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다.

### 5. 결론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와 같이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생물자원의 전통적 제품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생산측면, 제품 수요의 특성과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다. 특히 지리적 표시는 특정한 지리적 지역과 관련되어 독특한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생산과 수요에 관한 문제이다.

<sup>34</sup> 1992년 6월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은 님나무의 추출물에 대하여 그레이스(W. R. Grace)사에 특허(특허번호: 5,124,349)를 부여하였다. 특허부여 대상은 안정적인 아자디락틴(azadirachtin)과 아자디락틴을 만드는 제법이며, 1994년 3월 미국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식량작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자디락틴을 니믹스(Neemix)로 등록하였는데, 니믹스는 님나무로부터 추출한 첫 번째 특허제품이다. 그러나 1995년 9월 경제동향재단(Foundation on Economic Trends: FET)에 의하여 주도된 225개의 농업·과학·무역단체의 연합체는 미국특허청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서의 내용은 님나무특허가 신규성이 부족하고 비도덕적이라는 이유이다. 이들 연합체는 님나무특허가 서구세계의 '지적해적'(intellectual piracy)이라고 주장하였다(Marden 1999);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을 이용한 식물에 기초한 특허는 Neem tree 사건 이외에 카바(폴리네시안 산 관목), 바바스코(Barbasco), 엔도드(Endod)와 인도산 심황인 튜머릭(Turmeric) 사건과 기타 여러 사건이 있다(Correa 1999).

<sup>35</sup> 님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은 님 파운데이션(Neem Foundation)의 웹사이트에 기술되어 있다(<http://www.neemfoundation.org>).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유엔 환경계획(UNEP)의 생물 다양성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양자적 접근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식량농업 기구(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에 다자체제의 접근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적 접근방식은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개별적인 사적 계약에 의하는 것이고, 다자적 접근방식은 중앙 통제적인 접근과 이용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존의 양자적 사례인 미국국립암센터의 수집계약(Letter of Collection), 인비오-머크(INBio-Merck)협정, 국제생물다양성협력 그룹(ICBGs), 샤먼(Shaman)의약회사 등의 사례들은 형평한 이익 공유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중요한 원인은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대등한 협상능력의 부재이다. 따라서 식량농업기구에서 추구하는 다자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통제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유엔 환경계획과 식량농업기구 양 국제기구의 논의는 모두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의 관점에서 지역적 및 토착공동체보호를 위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구현된 “관행”은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련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협약 제8조 (j)에 반영되었다. 생산의 특성은 수요의 특성과 같이 중요한데,

- 1) 시장 내에서 전통적 생산, 재배 또는 공정방법,

- 2) 차별적인 지리적 출처,
- 3)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
- 4) 생물 다양성에 우호적인 생산,
- 5) 또는 지역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행 또는 체제와 같은 일부 차별적인 특성을

소비자에 호소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한 상품에 대한 “분할된” 시장수요에 대한 잠재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지역의 장소에서 그러한 능력이 존재한다면, 인센티브로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형태의 개발과 이용은 대부분 성공할 것이다.

카바는 상표 보호에 가장 가능성이 많고, 잠재적으로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남태평양의 생산자들이 문화적이고 지적인 투입과 오늘날 이용되는 카바품종과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와 방법의 상호 연관성으로부터 더욱 많은 이익을 얻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마크는 지역공동체에 이익을 되돌리고 환경적으로 낮은 영향을 주는 방법에 의해 원산지지역에서 생산된 카바를 확인시켜 준다.

바스마티 쌀은 지리적 표시로부터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제품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원산지인 인도 아대륙의 바스마티 쌀을 면밀하게 확인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재배와 채용되는 공정과 생산방법으로부터 발생한 바스마티 쌀의 품질에 대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적합성의 평가는 지속 가능한 전통을 반영한 현재의 생산규범과 이익을 지역공동체에 되돌리는 것에 대한 추가

적인 정보의 수입에 의존할 것이다.

퀴노아와 루이보스는 지리적 표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전통적인 공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식품과 음료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된다.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비록 제품의 특성이 원산지 와 원산지에서 채용되는 생산과 공정방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들 제품의 시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두 사례에서 제도적인 체제는 더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한다.

님은 아마 이러한 지적재산권 형태의 적용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님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제품이 대규모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재배하는 농부들의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적합한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상표는 그러한 시장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현황조사와 법적 보호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인삼, 보성 녹차, 돌산 갯김치, 순창 고추장, 강릉 두부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품목의 확대나 지리적 표시의 통보 및 등록에 관한 다자체제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

법 등 일부 법률에서 지리적 표시와 상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총체적인 조사와 보호는 미흡하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적재산권보호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과 관련지식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국립종자관리소. 2002. 『알기 쉽게 해설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국립종자관리소.

박철호 등. 2000. 『식물유전자원학개론』. 도서출판 진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2002. 『전통의약 관련 전통 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 연구』. 특허청.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1999. 『지적소유권법』 (하). 육법사.

오경희 등. 2002. “생물유전자원의 주권확보 및 관리기법연구(I).” 『국립환경연구원보』. 국립환경연구원.

오윤석. 2003. 1.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 『지식재산 21』. 특허청.

이재곤. 2001.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평론』 통권 제15호. 국제법평론회.

Anil Gupta. 1995. Debate on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ird World Farmers and Scientists.

Carlos M. Correa. 1999.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O Background*

*Study Paper* No.8,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Clark Peteru. 1997. "Indigenous Innovations and Practices: A Case Study of Kava in the South Pacific." presentation to Workshop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Biodiversity.

Downes, David R. 1997. "Using Intellectual Property as a Tool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CIEL discussion paper.

van Latum, E.B.J. and R. Gerrits. 1991. "Bio-Pesticides in Developing Countries: Prospects and Research Priorities." *Biopolicy International Series* 1. ACTS.

Marden, Emily. 1999. "The Neem Tree Patent: International Conflict over the Commodification of Life."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Daes, Erica. 1993. "Protection of the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 Fina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conformity with Sub-Commission Resolution 1993/44 and Decision 1994/105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Hernandez Bermejo J.E. and L. Leon. 1994. *Neglected Crops: 1492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AO Plant Production and Protection Series, No. 26.

Verrengia, Joseph B. 1998. "Root Effect of Kava: Stress-Relieving Herb Poised for Therapeutic Stardom." *The Rocky Mountain News*.

Halewood, Michael. 1999.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Law: A Preface to Sui Generi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cGill Law Journal* 44.

Brevoort, P. 1998. "The Booming U.S. Botanical Market: A New Overview." *Herbalgram* 44.

Brown, Ralph S. 1994. "New Wine in Old Bottles: The Protection of France's Wine Classification System Beyond Its Borders."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12.

Prakash, Siddhartha. 1998. "Country Study: India." Part 6. Local Species-Tumeric, Neem and Basmati,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website. Trade and Development Center.

Van Wyck B., B. van Oudsthoorn and N. Gericke. 1997. *Medicinal Plants of South Africa*.

■ 원고 접수일 : 2004년 10월 2일  
 원고 심사일 : 2004년 12월 3일  
 심사 완료일 : 2004년 12월 21일